

●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-000호

「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」을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10월 8일

국토교통부장관

「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(안)

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 규정의 명확화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항공안전데이터수집분석시스템 운영업무 수탁기관을 적용대상에 추가하고, 사고·준사고 데이터 처리 담당자 및 의무보고 데이터 처리 담당자의 업무절차를 구체화하는 한편, 국내 실정에 맞는 위해요인 목록과 심각도의 정량 평가방법을 신설하여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관련 업무 절차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“사고조사데이터”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, “국가 항공안전 프로파일”의 정의를 신설함(안 제2조)

- 나. 항공안전법(제61조의2)에 따라 항공안전데이터 수집·분석·처리를 위탁받아 운영중인 전문기관(항공안전기술원)을 적용범위에 추가함(안 제3조)
- 다. 항공정책실 부서 신설 및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, 데이터 관리화 활용도 제고를 위해 담당 업무와 책임범위를 명확히함(안 제4조)
- 라. 항공안전장애로 접수된 사항이 사고 또는 준사고로 추정되는 경우 재검토를 진행할 수 있는 절차를 추가함(안 제11조)
- 마. 국토부 담당자 뿐만 아니라 해당 업무를 위탁 받아 운영중인 전문기관 담당자도 의무보고에 대한 세부정보(발생일시, 위치 등)를 파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함(안 제13조)
- 바. 부서별 업무담당자의 의무보고데이터 분류 기한을 14일로 설정함(안 제14조)
- 사. 각 부서에서 수집된 정보를 총괄부서 공유하여 총괄부서가 안전동향 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절차 구체화함(안 제43조 및 47조)
- 아. 우리나라 항공운송 환경에 맞는 위해요인 분류체계를 신설함(안 제51조 및 별표 8의2)
- 자. 위해요인 분석 및 심각도 구분 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정량적 평가방법을 도입함(안 제55조 및 별표 12)
- 차. 데이터 분석결과를 시각화하여 표출하는 등 활용방안을 구체화함(안 제79조)

### 3. 의견 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0월 17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(참조 : 항공안전정책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행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)→정책자료→법령정보→입법예고·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| 개 정(안) | 수 정(안) | 수 정 사 유 |
|--------|--------|---------|
|        |        |         |

나.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보내실 곳

○ 주소: (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(정부세종청사 6동) 국토부  
항공안전정책과(☎ 044-201-4682, fax 044-201-5628)

○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→ 정책자료 → 법령정보 → 입법예고·행정예고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(전화 : 044-201-4682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